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52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창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가문일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0918/349602 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8. 10.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D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2017. 8. 10.자 대출금 채권(대출원금 2,000만 원,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27.9%)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20. 6. 26. “C은 원고에게 29,519,036원 및 그 중 19,954,161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2020차전152809), 위 지급명령은 2020. 8. 7.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30459/3178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E은 2018. 10. 5. 사망하였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E의 배우자, 상속지분 3/11), F, G, H, C(E의 자녀들, 상속지분 각 2/11)은 2018. 10. 18.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24.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2117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채무 19,954,161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7,922,000원, I카드에 대한 채무 4,158,000원, J카드에 대한 채무 4,367,000원, K카드에 대한 채무 21,252,000원, L에 대한 채무 6,577,000원, 국세채무 55,000,000원 등 합계 119,239,161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M단체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이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함으로써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망인과 약 50년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1968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해왔으며 피고는 현재까지도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4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집을 비롯하여 경작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2/11) 가액이 특별히 거액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협의 당시 75세의 고령이었던 피고로서는 피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생활해온 장성한 자녀 C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협의 당시 C 뿐 아니라,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도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자녀들이 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뜻을 모은 결과로 보일 뿐 특별히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로 비춰지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채무초과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의 사망 및 이에 대한 C의 인식 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의 당시 C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지 않고, C과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만일 피고가 C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C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태안군 임야 25105㎡
2. 충청남도 태안군 임야 1291㎡
3. 충청남도 태안군 도로 622㎡
4. 충청남도 태안군 답 2833㎡ 끝.

